

광주지방법원 2020. 8. 11 선고 2020가단1023(본소), 2020가단514475(반소) 판결

[점유회수 · 유치권 부존재 확인]

전 문

원고(반소피고) A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경은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최종명

변 론 종 결 2020. 7. 21.

판 결 선 고 2020. 8. 11.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설기계를 인도하라.
2. 원고(반소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설기계를 인도받은 후, 피고(반소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설기계를 인도하라.
3. 별지 목록 기재 건설기계에 관하여 원고(반소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본소: 주문 제1항과 같다.

반소: 주문 제2, 3항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광주지방법원 C 건설기계임의경매 사건에서 별지 목록 기재 건설기계(이하 ‘이 사건 건설기계’라 한다)를 매각받아 2019. 12. 2.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2020. 1. 1.까지 전남 담양군 D에 있는 창고에 보관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건설기계를 점유하였는데, 피고가 2020. 1. 1.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건설기계를 싣고 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설기계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가 정당한 유치권자가 아니라고 다투나, 점유회수의 청구에 있어서는 점유를 침탈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당시에 점유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만을 살피면 되는 것(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18294 판결 등 참조)인바,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건설기계의 소유자이고, 원고는 이 사건 건설기계를 유치할 권리가 없으므로, 유치권부존재의 확인 및 이 사건 건설기계의 인도를 구한다.

원고가 주장하는 수리비채권 등은 존재하지 않거나 시효로 소멸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9.경까지 이 사건 건설기계의 수리비로 11,212,320원, 그 이후 보관비, 운반비, 장비관리비로 14,000,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설기계를 유치할 권리가 있다.

이 사건 건설기계의 지입회사였던 E 주식회사가 2020. 6. 22. 이 사건 건설기계의 수리비 등을 확인하고 지급을 약속하였으므로 수리비채권 등은 시효로 소멸하지 아니하였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이 사건 건설기계의 소유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건설기계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다. 유치권항변에 관한 판단

1) 수리비의 발생

갑 제5, 6, 14, 15, 17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건설기계를 수리하면서 2015. 9. 중순경까지 11,212,320원을 지출한 사실, 원고는 피고가 위 기초사실과 같이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건설기계를 가져간 것과 관련하여 피고를 고소하였는데, 검사는 피고를 권리행사방해죄로 기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는 이 사건 건설기계에 관하여 수리비채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2) 보관비의 발생여부

원고는 이 사건 건설기계의 보관비가 2015. 9. 중순경부터 이 사건 건설기계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집행관이 점유를 시작한 2018. 3. 23.까지 30개월 동안 매월 300,000원 합계 9,000,000원이라고 주장한다.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건설기계를 보관하였다는 전남 담양군 F에 있는 G동 392㎡를 원고가 보증금 80,000,000원에 월세 1,200,000원에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G동의 면적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건설기계의 보관비가 월세의 1/4에 해당하는 300,000원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운반비의 발생여부

원고는 이 사건 건설기계를 보관하다가 원고의 사업장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 이 사건 건설기계를 원고의 사업장인 포항으로 이동시켰다가 다시 전남 담양 소재의 창고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3,000,000원의 운반비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원고의 사정에 의하여 발생한 비용으로 이를 들어 이 사건 건설기계에 관한 채권이라 할 수 없다.

4) 장비관리비의 발생여부

원고는 2016. 11. 26.에서 2016. 11. 27. 이 사건 건설기계를 포항으로 이동시키기 위하여 점검하는데 700,000원, 2018. 1. 28.에서 2018. 1. 29. 이 사건 건설기계를 담양으로 이동시키기 위하여 점검하는데 900,000원이 소요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3)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건설기계를 이동시킨 것은 원고의 사정에 의하여 발생한 비용으로 이를 들어 이 사건 건설기계에 관한 채권이라 할 수 없다.

원고는 2017. 1. 20. 이 사건 건설기계가 장기주차되어 이를 점검하고 시운전하는데 400,000원의 비용이 소요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2015. 9.경 이 사건 건설기계의 수리를 마친 후 1년 넘게 장비관리를 하지 않다가 2016. 11. 27. 이 사건 건설기계를 포항으로 옮기기 위하여 점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로부터 약 2개월만에 “장기주차”로 인하여 다시 이 사건 건설기계를 점검하였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

라. 시효소멸의 재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의 위 수리비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3호에 정한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으로 그 소멸시효기간은 3년인바, 앞서 보았듯이 원고는 2015. 9.경 이 사건 건설기계의 수리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로부터 3년이 지난 2018. 9.경 원고의 위 수리비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건설기계의 지입회사였던 E 주식회사가 2020. 6. 22. 이 사건 건설기계의 수리비 등을 확인하고 지급을 약속하였으므로,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시효이익의 포기는 상대적 효과가 있을 뿐이므로, 이를 피고에게 주장할 수 없다.

마. 결론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건설기계에 관한 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고, 원고는 이 사건 건설기계를 유치할 권리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는 이 사건 건설기계의 소유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건설기계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원고가 이 사건 건설기계에 관하여 수리비채권 등이 있어 이 사건 건설기계를 유치할 권리가 있다고 다투고 있는 이상 피고로서는 유치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남준

별지목록

등록 번호 :

형식승인번호 : 5-02-0097-00-00

건설기계 명 : 굴삭기

규 격 : 28.3톤

차 대 번 호

형 식 : 325DL

년 식 : 20142008

최종 소유자 : (20%), (80%) 사용 본거지 : 광주 광산구

※ 유체동산의 소재지 : 광주 광산구 살가
- 이 상 -